

질의와 회신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보험료 사후정산관련 질의

|| 질 의 ||

- 장기계속공사로서 2006.11.21일 입찰공고하여 '06.12.26일 1차분을 계약체결하여 년차별로 차수계약하고 있는 「○○항 방파제 축조공사」계약관련 '07. 4. 2일 이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인공어초시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요청한 결과 인공어초 제작·설치를 물품으로 분류하여 수의계약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적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34호('07. 3.2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9조 내지 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고 사후정산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대가지급 청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강·연금 사후정산은 동 예규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07. 4. 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도

록 한 바 그 이전 입찰 공고한 계약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사를 조달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서상 대상보험료가 동 예규에 따라 계상되었다면 공고문상 동 예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관련 질의

■ 질 의 ■

- 「○○시 연꽃테마파크 아치형 조형물 설치」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추진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07. 5. 15일 이후 최종 디자인안 제출일인 9.20일까지 총7차에 거친 디자인 수정·보완 중 '07.10.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거 설치불가 회신을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그간 협상대상자인 (주)△△가 협상과정에서 소요된 인건비, 연구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는 지 여부와 협상하기위해 제시한 디자인으로 수정·보완 협의회를 실시한 경우에도 창작비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체결 전 협상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협상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는 별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창작디자인 등을 요구하여 협상대상자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민사관련 사항으로 민사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공사 설계변경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하

질의와 회신

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요구를 받아 설계변경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 질의 1) 변경단가는 계약당시 단가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 단가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의 2)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의 의미는

회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면,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같은 예규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의 단가를 말합니다.

4. 용역 특허적용발주관련 질의

질의

- 당사는 '06년 9월 4일 정수시설물 청소방법 특허(10-622343호)등록업체로 원수가 취수장에 유입 후 수돗물을 생산하여 가정으로 송수전까지 전공정의 정수시설물을 청소하는 방법으로 기존 청소방법(샌드웍프, 분무가, 양수기 등 이용)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로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경쟁입찰에 있어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발주(사업)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57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III- 2- 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간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용역)으로서 동 공법이 공사(용역)의 대부분(87%이상) 적용될 경우에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입찰 전에 기술(특허)사용협약을 제출받아 제출한 자로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전자견적 입찰시 주된 영업소 기준일 관련 질의

■ 질 의 ■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소액수의계약 요령-③“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한다.”고 한 규정과 관련,
- 다음과 같은 경우 참가자격이 되는 지 여부
 - △△자치단체의 수의견적안내 공고일 : '07. 11. 14
 - 본사에 대한 본점주소지 변경신청서 법원(등기소) 접수일 : '07.11.13
 - 본점주소지 변경등기 완료일 : '07.11.14
 - 투찰일 : '07.11.19.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수의견적안내 공고에 있어서 지역사업자로 제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당해 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 확정일자(변경등기 완료일 : '07.11.14)가 수의견적 안내공고일 전일('07.11.13)이후에 해당되므로 견적서 제출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회신

6. 공사공정예정표 제출관련 질의

■ 질 의 ■

- △△시와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인 “저수조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공정표 변경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로서
 - 계약당시 - 착공일 : '06. 8.28 - 준공일 : '08. 2.27
 -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 2개월
 - 재 착공일 : '07. 3. 5, 변경 준공일 : '08. 4.27
- 동절기 공사 중지 후에 '07. 3월 재착공하면서 재착공계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면서 착공계에 공사중지기간이 누락된 채로 발주처에 제출되자 발주처에서는 재 착공 공정표상 날짜 표기가 없으므로 최초 착공일로부터 공정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착공시 공사공정예정표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예규 동 조 제3항에의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사실이 있고 해제(지) 명령에 의거 재 착공계가 접수되었다면 공사중지 기간이 표기된 예정 공정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전자견적 입찰시 부정당업체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시와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인 “저수조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공정표 변경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로서
 - 계약당시 - 착공일 : '06. 8.28 - 준공일 : '08. 2.27
 -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 2개월우리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엔지니어링진흥법령에 따른

도로 및 공항 외5개 부문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견적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체결 한 용역건 관련 41일 간의 지체상금을 부과납부하고 1년간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동일 자치단체가 수의견적 안내공고한 토목공사에 개찰 1순위가 된 경우 그 지방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결격사유 중 하나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사실이 있는 자”에서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8. 공사 사회보험료정산관련 질의

■ 질 의 ■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와 관련 당해사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업체) 소속 상용근로자가 참여하여 특정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회사일반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52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4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대상자는 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직접 근로가 확인된 상용 근로자 (현장 대리인 포함)역시 해당되며,
- 이 경우 당해 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술용역 적격심사관련 지역업체참여도 적용 질의

질 의

- 우리 시에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집행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력기술관리법령이 다음과 같이 복합된 경우로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분담비율이 20% 미만 일때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공종(분담이행)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전 기
분담비율(%)	73	7	16	4
적용 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회 신

-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경우,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을 선택적용 할 수 있으나,
-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 비율이 20%이상인 경우에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 1점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종이 4%에 해당된다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취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공사 설계변경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공사에정금액 151억원인 상수도시설공사 입찰에 참여(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댐 조성에 의한 수원지가 포함된 상수도 시설공사로 댐

높이 10m이상 준공실적을 갖춘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하여 2004. 9. 9일부터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입찰을 준비하는 시공회사에 배부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는 전기분야 내역이 없었으며, 현장설명시 얘기는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내역입찰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에 전기공사가 누락되었다면 전기공사를 신규로 포함시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서에 전기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물량내역서상 전기공사에 대한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도면 및 시방서를 확정하고 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II.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관련 질의모음

1. 공사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부정당 제재관련 질의

질의

- “○○○ 용역”을 경쟁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을 한 후 계약체결을 하였으나(공고문에 과업지시서 상 기술사를 착공전까지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 계약체결 후 공동계약자 중 한 업체가 기술사 확보가 안된 경우 부정당 제재대상인지 여부(전체인지 아니면 원인제공업체만 대상인지)
- 계약보증금 귀속은 참여업체 모두인지 아니면 원인 제공업체만 대상인 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당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동계약에 있어서 부당당 제재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야기시킨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 전체 구성원 중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면 발주기관은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요청에 의한 변경계약에 의하거나,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사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부당당업체 제재 관련 질의

질의

- 올해 3월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와 계약한 급식납품업체가 한우가 아닌 젓소를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받은 당일에는 등급판정서만 믿고 납품을 받았으나, 차후에 유전자 DNA 검사 결과 젓소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온 2007. 급식기본방향 공문을 보니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당업체 제재, 검찰청에 고발조치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계약은 해지 했으나, 부당당업체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 제재 기간을 정함에 있어 어느 조항에 근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어느 항에 해당이 되는지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3월 급식품 대가 지급에 있어서 한우대신 젓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대가 지급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처리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3호 나목의 비율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기간을 적용하여 심의를 부치고, 규격·품질 등에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한우 예정가격 산정 당시를 기준으로 젓소 예정가격을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출하여 동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개입찰시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G2B를 이용해 공개입찰을 하여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부정당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도립 대학인 △△대학 산하 특수법인 산학협력단입니다. 이럴 경우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체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기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인 대학이 발주기관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명으로 입찰·계약하는 경우에는 자체 회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처리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여행사의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하계방학 해외연수를 위해 항공권구매용역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금액 1억 5백만

질의와 회신

원- 적격심사 대상) 1위로 낙찰된 업체(관광업체)에서 항공권 구매를 위해 여러 항공사와 많은 협의를 했으나 항공사에서 성수기 등을 이유로 단체할인의 거부 및 과도한 금액을 요구(기초금액보다 많은 금액)해서 계약을 포기하려 합니다.

- 이 경우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6항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인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부적격인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심사를 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항공권이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계약상대자 무리한 요구로 계약해지시 부정당제재 질의

질의

- 우리 공단에서 관리·운영중인 체육센터내 구내매점을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순위 낙찰자는 입찰공고내용과 무관한 자판기 운영권을 요구하며 계약을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내매점 공개입찰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2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한 후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 내용과 무관한 자판기운영권 요구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개찰결과 동일가격자 추첨불참처리에 대하여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계약법에 의거하여 용역전적공고를 실시하고 개찰을 시행한 결과 2개 업체가 참가하여 동일가격 투찰로 공동 1순위가 되었습니다. 두 업체에게 지방자치계약법시행령 제 48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코자 참석안내를 보냈으나, 두 업체 모두 불참할 경우 부정당 제재를 받는지의 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추첨에 불참할 경우에 처리 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와의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추첨 불참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 부정당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재를 하게 되면 제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동가입찰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점수도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 의서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7. 실시설계용역 변경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 질의

■ 질 의 ■

- 현황
 - A업체 : 계약체결업체,
 - B업체 : A업체를 인수한 업체
-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계약(A업체)하여 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통보하였으나 변경계약미체결로 계약해지 상태임

질의와 회신

- 기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미 B업체에게 회사를 양도를 한 상태이며 A업체는 없는 상태이며 B업체는 회사를 양도하면서 A업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철근콘크리트공사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만 인수하여 회사를 등록함.

질의1) 이 경우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질의2) 계약해지 후 계약상대자 재선정 절차 여부

회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법인 및 대표자(입찰의 경우 입찰대리인 포함)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발생 당시에 당해 원인을 직접 야기한 A법인 및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의 성질, 진척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새로운 입찰여부를 판단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8.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질의

질의

-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노동부의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정에 따른 원도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자격제한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 원도급자가 발주부서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사망근로자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원도급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노동부 요청사항은 원도급자-입찰참가자격제한, 하도급업체-영업정지) 여부
 - 원도급자가 사고당시의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를 변경했습니다. 물론 법인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이 경우 바뀐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은 제재사유 발생 당시에 제재사유를 야기한 자가 해당되므로 회사명·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이 동일한 경우 당해 법인과 종전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하자보수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질의

【 질 의 】

- 하자보수책임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비용과다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자보수증금을 공제조합에 청구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 하자보수증금 청구와 별개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꼭 해야 하는지 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시 청문절차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지 여부
 - 시공법인이 상호변경시에도 변경된 회사로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상호변경의 경우에도 상법 및 공사관련법령에 사업전체에 대한 승계시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법인등기부 및 허가·면허 등 서류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1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공사(전면책임감리) 시공 중 화재로 인하여 근로자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은바 있어 시공사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6월 이상 1년미만)코자 질의합니다.

질의1) 현재 해당 자치단체는 계약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를 임시구성하여 심의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또는 정식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의2) 상기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아파트 진입로 설치 등의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금전적인 손실(36,000만원)과, 화재로 인하여 10억원정도의 손실이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4항에 해당하는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을 하여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례제정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집단민원 처리 및 화재발생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범위질의

■ 질 의 ■

-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1개월이상 (업체 연락두절) 미룬 업체와 결국 계약(견적입찰)을 해지하였습니다.
수의계약운용요령 중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은 되지 않으나 1년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의 경우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 소액수의계약(견적입찰)도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한다면 그 제재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인지 전국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